

11. 法人稅法施行令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財政經濟院公告 第1995-101號 1995. 12. 13

1. 개정취지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여력확충을 지원하고,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유흥업소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비영리법인이 2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과 같이 면제요건을 3년으로 조정하여 일원화 함.

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여력확충을

통한 주택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보증잔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인정대상 신용보증기관의 범위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추가함.

다. 국가 통신기반사업인 초고속국가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전기, 가스, 열사업자 등이 수오자로 부터 금전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사부담금 손금산업대상사업의 범위에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추가하여 통신사업자가 국가 등으로 부터 지원받는 초고속국가망사업비에 대하여도 전액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기업이 접대비지출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대기업 50퍼센트, 중소기업 30퍼센트)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흥업소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제도면에서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되,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역별 분포실태를 감안하여 서울·광역시 소재 기업은 75퍼센트 이상, 시지역 소재기업은 50퍼센트 이상, 군이하 지역 소재기업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하였음.

마. 현재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유치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 접대비에 추가하여 모집권유비를 일정한도(계약금의 0.2%)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집권유비 비용인정한도를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여 비생산적인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

바. 채권 등의 중도매도 및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타 현행제도의 미미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재정경제원장관(참조: 법인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공기보다 품질생각 이익보다 기술생각